

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안

의 안 번 호	620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9

제 출 자 : 안산시장

□ 제정이유

-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함.

□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조성 (안 제2조)

노인복지기금이라함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,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하며, 출연금은 안산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잡수입으로하고,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출연한다.

○ 기금의 용도 (안 제3조)

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도는 노인복지회관운영, 노인여가시설관리운영,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등 8개 사업으로 한다.

○ 기금의 운영관리 (안 제4조)

기금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며,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관리하고, 기금은 시급고의 이자율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한다.

○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(안 제5조)

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○ 회계 공무원 (안 제11조)

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, 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, 기금출납원은 노인청소년계장으로 한다.

□ 조례안 : 별 첨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 근거 : 노인복지법 제4조 (노인복지의 책임)

노인복지법 제12조 (경로사업의 실시지원)

○ 소요예산 : 20억원 (년 4억, 5개년간)

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,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조성) ①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노인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,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

② 제 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안산시의 출연금
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

③ 안산시의 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출연한다. 단,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년 출연금을 증감하거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용도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복지회관(노인복지프로그램) 운영

2. 노인여가시설(경로당)관리 운영

3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

4.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

5.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

6. 충효, 예절 기타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

7. 노인단체(노인회지회, 노인학교, 경로당) 운영지원

8.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다.

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 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(안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)에 납입, 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한다.

④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, 매년 이자의 10 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중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.

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1. 국채, 공채, 기타 유가증권 매입
2. 기타 기금 중식사업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대한노인회안산시지회장, 기획실장, 총무국장, 사회경제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,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노인청소년계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
2.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경제국장
2. 분임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3. 기금출납원 : 노인청소년과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계관리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결산 및 보고)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620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9. 30.

제출자 : 보사·환경위원회
황호명 외 10인

1. 수정이유

- 등 조례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삽입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시의원이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제3조(기금용도) 8호중 "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"를 신설하고, 제6조 3항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3항중 "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1인"을 삭제하고, "4인"을 "5인"으로 수정하며, "위원회에는"을 "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"로 수정함.

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8호 중 "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"를 신설하고, 제5조 3항 중 "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1인"을 삭제하고, 위원회 구성 중 "4인"을 "5인"으로 하며,

제5조 5항 중에서 "위원회에는"을 "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용도)</p> <p>1. ~7. (생략)</p> <p>8.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<신설>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장, 기획실장, 충무국장, 사회경제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중 1인,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4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청소년과장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용도)</p> <p>1. ~7. (원안과 같음)</p> <p>8.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~②(원안과 같음)</p> <p>.....<삭 제></p> <p>..... 5인</p> <p>④(원안과 같음)</p> <p>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</p> <p>.....</p>